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위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450

발의연월일: 2024. 7. 31.

발 의 자:김위상·김선교·박준태

권성동 · 임이자 · 우재준

서벆수 • 박정하 • 성일종

구자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·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자발적 협약인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, 협약의상대방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, 보전·관리의대상이 경관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협약체결 및 지원의 대상과 내용이현행법의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음.

따라서, 자원공원법의 목적과 같이 생물다양성 증진, 사찰림 보호 등 자연생태계 보전·관리활동도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포괄적·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,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(안 제20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제1항 중 "경관을"을 "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 경관을"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의2(공원보호협약의 체결)	제20조의2(공원보호협약의 체결)
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	①
<u>경관을</u> 효과적으로 보전·관리	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 경
하고, 그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	관을
여 토지 소유자, 그 밖에 대통	
령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"소	
유자등"이라 한다)와 공원보호	
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	
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	
다.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